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89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강원 고성군 C 대 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2.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0. 2. 17. 접수 제16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1. 19. 'D는 원고1)에게 8,210,526원 및 그 중 4,193,632원에 대하여 200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위 법원 2008차89224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2. 9. 확정되었다.

나. 춘천지방법원은 2011. 12. 15. D에게 파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10하단2620 결정), 2012. 2. 3. D를 면책하였다(위 법원 2010하면2620 결정). 그런데 위 사건에서 D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D의 직계존속인 E의 소유였는데, E이 2008. 10. 20. 사망하자, E의 상속인 또는 순차상속인들은 2020. 2. 17.경 위 토지를 E의 직계비속 중 1인인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0. 2. 1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13분의 2)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D와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위 토지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D가 2020. 2. 17.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원고가 D에 대하여 행사 가능한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만이 위와 같은 범위로 제한되므로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후, D가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D가 악의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 상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 D는 2021. 5.경 동해시에 과세표준액을 18,486,500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다현

1) 당사자란에 원고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F’가 표시되었다.

2)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밖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